

대통령령 제10934호(1982년 10월 21일)

食品衛生法 施行令 一部 改定

調 査 部

식품위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 조제 2 항 중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도지사”를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 5 조제 1 항 중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도지사”를 “도지사”로 하고, 제 2 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도지사”로 한다.

제 6 조제 2 항중 “2종식품위생관리인을 두어야 한다”를 “2종식품위생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다만, 동일한 시(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를 제외한다). 군·구안에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동종의 영업을 경영하는 자가 2종식품위생관리인에 갈음하여 1종식품위생관리인을 두는 경우에는 위생관리인을 공동으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1인의 식품위생관리인이 관리할 수 있는 업소수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다”로 한다.

제 7 조제 2 항중 “제 5 조제 2 호나 제 3 호에”를 “제 5 조제 1 항제 2 호 또는 제 3 호에”로 한다.

제 9 조제 1 항중 제 1 호 내지 제 3 호·제 7 호·제 10 호·제 15 호·제 17 호·제 24 호·제 30 호 및 제 47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 1 호의 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대중음식점영업** : 유흥종사자를 두지 아니하고 대중적인 탕반·면류·도시락등을 조리판매(이동식 판매를 포함한다)하며, 간단한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대중음식점과 갖죽·깨죽등 죽류와 인삼차·쌍화차등 차류(커피를 제외한다)만을 조리판매하는 인삼 찻집으로서 제 1 호의 2·제 2 호 내지 제 5 호의 영업에 속하지 아니하는 음식점영업을 말한다.

1의 2. **간이주점** : 객석의 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으로서 접객부를 둘 수 있고,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2. **전문음식점영업** : 접객부를 둘 수 있고, 고가의 전문음식 및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3. **유흥음식점영업** : 유흥종사자를 두고 주류와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며, 노래와 연주 및 춤등을 행할 수 있는 영업으로서 일반유흥음식점(노래·연주 및 춤등을 감상할 수 있는 극장식 식당·바아·비어홀·살롱·요정등)과, 무도유흥음식점(손님이 춤을 추는 무도장을 두고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카바레·나이트클럽·고고클럽등)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외국 군인 및 외국인선원등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유흥음식점 또는 무도유흥음식점 형태의 영업)을 말한다.

7. **아이스크림 제조업** : 아이스크림·아이스밀크·샤벳트·비유지방아이스크림·빙과류나 아이스크림분말·샤벳트분말·비유지방아이스크림분말 등을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10. **절임식품류제조업** : 단무지·젓갈류·콩조림및 기타 식품을 절임하거나 졸임하는 영업을 말한다.

15. **통조림 또는 병조림제조업** : 통 또는 병등 밀폐된 용기에 원형·절단상태의 고형물·젼 또는 죽상태의 것을 넣어 병원균 및 부패·세균을 가열·살균 처리하여 상당한 기간 내용식품 고유의 품질을 보존하게 하는 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17. **청량음료 또는 과채류등 음료제조업** : 청량음료 제조업은 유기산음료·탄산음료·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혼합음료(생유·우유 또는 유제품에 음료성분과 첨가물을 가하여 우유로 환

식품위생법 시행령

원될 수 없는 청량감을 주는 음료성 식품으로서 무지 고형분 3퍼센트 미만을 함유한 것)등을 제조하는 영업을 말하며, 과채류등 음료제조업은 과채류 또는 곡류를 주성분으로 하여 직접 음용할 수 있는 음료를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24. 인스탄트식품제조업 : 직접 또는 간단한 조리 방법(가열, 물에의 용해등)으로 식용이 가능하며, 특별한 온도조정이 없어도 보존성이 높고 휴대·운반이 용이한 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으로서 다른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을 말한다.

30. 식품가공업 : 식품원료를 추출·분쇄·혼합등의 방법으로 단순히 가공하여 식용할 수 있는 식품을 제조하거나 다른 식품의 제조·조리등에 사용하는 중간제품을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양곡관리법에 의한 제분업을 하는 자가 제분을 하거나 가공위탁자로부터 제공받은 재료만을 사용하여 식품을 가공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47. 젓가락등 위생처리업 : 소독젓가락·이쑤시개를 위생적으로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 9 조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 1 항제 1 호의 영업은 이를 대중음식점 또는 인삼찜집으로 구분하여 신고하게 하여야 하며, 동항제 3 호의 영업은 이를 일반유통음식점·무도유통음식점 또는 외국인전용유통음식점으로 각각 구분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제 9 조의 2 제 3 항중 “제 9 조제 1 항제 2 호 내지 제 6 호”를 “제 9 조제 1 항제 1 호의 2·제 2 호 내지 제 6 호”로 한다.

제11조제 1 항제 2 호 및 제 3 호중 “서울특별시·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를 “도지사”로 한다.

제11조의 4 항중 “제 9 조제 1 항제 3 호·제 6 호 내지 제 27 호”를 제 9 조제 1 항제 3 호·제 7 호 내지 제 27 호”로 한다.

제12조제 1 항제 6 호중 “국립보건연구원장”을 “국립보건원장”으로 하고, 동조 제 3 항중 “서울특별시·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제 9 조제 1 항제 7 호·제 9 호·제11호 내지 제13호”를 “도지사가 제 9 조제

1 항제 7 호·제 9 호·제11호·제12호·제14호”로 한다.

제14조 본문 단서중 “공무원교육원의 급식소는 제외한다”를 “공무원교육원의 급식소와 그 종사자에 대한 급식만을 목적으로 설치된 집단급식소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5조제 1 항중 “50인이상에게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로 한다”를 “50인이상에게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로 하되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한 중소기업의 집단급식소를 제외한다”로 하고, 동조제 2 항을 삭제한다.

제17조제 1 항중 “1년”을 “2년”으로 하고, 제 2 항중 “통리하며”를 “통할하며”로 한다.

제23조중 “서울특별시·부산시장”을 “서울특별시·직할시장”으로 한다.

제24조중 “서울특별시·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를 “도지사”로 한다.

제29조제 1 항 및 제 2 항중 “부산시”를 각각 “직할시”로 한다.

제34조중 “서울특별시·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를 “도지사”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간이주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대통령령 제10,268호 식품위생법시행령중 개정령 부칙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주점영업자로서 대중음식점영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자 중 1982년 12월 30일까지 이 영에 의한 간이주점영업을 할 것을 관할 허가관청에 신고한 자는 제 9 조제 1 항제 1 호의 2의 규정에 의한 간이주점영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대중음식점영업의 신고를 하고 인삼찜집 형태의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관할 신고관청이 확인한 자는 이 영에 의한 인삼찜집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무도유통음식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음식점영업중 카바

레·나이트클럽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무도유희음식점의, 요정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일반유희음식점의 영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되, 요정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무도유희음식점의 시설기준을 갖추고 있음을 관할 허가관청으로부터 확인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한 무도유희음식점의 영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업종의 내용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 9조제 1항제 7호·제15호·제17호·제24호 및 제30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받은

영업자로서 이 영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업종의 내용이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내용과 일치되지 아니하게 된 영업자는 그 업종의 내용에 맞는 업종의 영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업종이 변경되는 영업자는 1984년 12월 31일까지 해당업종의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⑤(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위원인 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제 1 조(제품검사) ①(생략)	제 1 조(제품검사) ①(생략)	제 1 조(제품검사) ①(현행과 같음)	
②제 1 항의 첨가물에 대한 제품검사는 그 첨가물의 제조업 또는 소분업의 허가관청인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도지사가 행한다.	②.....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②.....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제 5 조(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임명) ①법 제 18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감시원은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도지사가 그 소속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한다.	제 5 조(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임명) ①.....도지사.....	제 5 조(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임명) ①.....도지사.....	
1~5. (생략)	1~5. (현행과 같음)	1~5. (현행과 같음)	
②보건사회부장관은 제 1 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만으로는 식품위생감시원의 인력확보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식품위생행정에 종사하는 자중 소정의 훈련을 2주 이상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식품위생행정에 종사하는 기간동안 잠정적으로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②보건사회부장관 또는 도지사.....	②보건사회부장관 또는 도지사.....	
제 6 조(식품위생관리인을 두어야 할 업종) 법 제 19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 9 조제 1 항제 7 호 내지 제 33 호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식품위생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제 6 조(식품위생관리인을 두어야 할 업종)	제 6 조(식품위생관리인을 두어야 할 업종)	
다만, 주세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았거나 인삼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영업자 및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하여 자체검사원을 두는 영업자는 제외한다.	
1. (생략)	1.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상시 2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영업자는 제 7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2종식품위생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2.	2.	
(단서 신설)		다만, 동일한 시(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를 제외한다)·군·구안에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동종의 영업을 경영하는 자가 2종식품위생관리	

현	행	개	정
			인에 같음하여 1종식품위생관리인을 두는 경우에는 위생관리인을 공동으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1인의 식품위생관리인이 관리할 수 있는 업소수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다.
제 7 조(식품위생관리인의 자격)		제 7 조(식품위생관리인의 자격)	
①(생 략)		①(현행과 같음)	
②1종식품위생관리인은 제 5 조제 2 호나 제 3 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한 자격을 얻었거나 동등한 과정을 이수한 자라야 한다. 다만,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의 제조업에 있어서의 식품위생관리인은 대학에서 약학·식품가공학 또는 식품학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라야 한다.		②.....제 5 조제 1 항제 2 호 또는 제 3 호에	
③(생 략)		③(현행과 같음)	
제 9 조(영업의 종류) ①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주세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았거나 인삼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은 제외한다.		제 9 조(영업의 종류) ①	
1. 대중음식점영업 : 대중적인 탕반·면류·도시락 등을 조리판매(이동식판매를 포함한다)하는 음식점 영업으로서 제 2 호 및 제 3 호의 음식점 영업에 속하지 아니하는 음식점 영업을 말한다.		1. 대중음식점영업 : 유흥종사자를 두지 아니하고 대중적인 탕반·면류·도시락을 조리판매(이동식판매를 포함한다)하며, 간단한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대중음식점과 갓죽·깨죽등 죽류와 인삼차·쌍화차등 차류(커피를 제외한다)만을 조리 판매하는 인삼차점으로 제 1 호의 2·제 2 호의 영업에 속하지 아니하는 음식점영업을 말한다.	
(신 설)		1의 2. 간이주점 : 객석의 면적이 33제곱미터만 으로서 접객부를 둘 수 있고,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2. 전문음식점영업 : 고가의 전문음식을 조리하여 판매하거나 접객부를 두고 주류 및 고가의 전문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2. 전문음식점영업 : 접객부를 둘 수 있고, 고가의 전문음식 및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3. 유흥음식점영업 : 유흥종사자를 두고 주류와 음식물을 조리 판매하며, 손님에 유흥을 위하여 가무음곡 또는 무도를 행하는 카바레(유흥종사자를 두고 주로 주류를 판매하며, 무도장을 두고 입장료를 받으며 가무음곡과 무도를 행하는 영업), 나이트클럽(유흥종사자를 두고 주류와 음식물을 조리 판매하며 무도장을 두고 입장료를 받으며 가무음곡과 무도를 행하는 영업), 요정(유흥종사자를 두고 주류와 음식물을 조리 판매하며, 가무음곡을 행하는 영업)과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외국인 및 외국인 신원등의 유흥과 휴식을 목적으로 유흥종사자를 두고 주류와 음식물을 조리 판매하며, 가무음곡을 하거나 무도장을 두고 무도를 행하는 영업) 등의 영업을 말한다.		3. 유흥음식점영업 : 유흥종사자를 두고 주류와 음식물을 조리 판매하며, 노래와 연주 및 춤등을 행할 수 있는 영업으로서 일반유흥음식점(노래와 연주 및 춤등을 감상할 수 있는 극장식 식당바아·비어홀·살롱·요정 등)과, 무도유흥음식점(손님이 춤을 추는 무도장을 두고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카바레·나이트클럽·고고클럽등) 및 외국인 전용유흥음식점(외국인 및 외국인 신원등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유흥음식점 또는 무도유흥음식점 형태의 영업을 말한다.	

현행	개정
<p>4.~6. (생략)</p> <p>7. 아이스크림제조업 : 아이스크림·아이스케이크·아이스캔디 등의 식품이나 액체식품 또는 이에 다른 식품을 혼합한 것을 동결시킨 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p> <p>8.~9. (생략)</p> <p>10. 절입식품제조업 : 단무지·갯갈류·통조림 및 기타 식품을 절입하거나 줄입하는 영업을 말한다.</p> <p>11.~14. (생략)</p> <p>15. 통조림 또는 병조림제조업 : 통 또는 병등 밀폐된 용기에 넣어 병원균 및 부패세균을 가열 살균 처리하여 상당한 기간 내용식품 고유의 품질을 보존하게 하는 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p> <p>16. (생략)</p> <p>17. 청량음료제조업 : 청량음료를 제조하는 영업을 말하며, 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p> <p>18.~23. (생략)</p> <p>24. 인스턴트식품제조업 : 조리과정에 있어서 번잡과 긴시간을 요하지 아니하고 식용에 제공할 수 있으며, 보존성이 높고 수송이 용이한 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으로서 다른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을 말한다.</p> <p>25.~29. (생략)</p> <p>30. 식품가공업 : 식품을 가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양곡관리법에 의한 제분업을 하는 자가 가공 위탁자로부터 제공받은 재료만을 사용하여 식품을 가공하는 영업을 제외한다.</p> <p>31.~46. (생략)</p> <p>47. 젓가락 위생처리업 : 식품점영업소의 손님에게 제공하기 위한 젓가락을 위생적으로 처리하여 포장 공급하는 영업을 말한다.</p> <p>48. (생략)</p> <p>②제 1 항제 3 호의 유흥음식점영업의 허가에 있어</p>	<p>4.~6. (현행과 같음)</p> <p>7. 아이스크림 제조업 : 아이스크림·아이스밀크·샤베트·비유지방아이스크림·빙과류나 아이스크림분말·샤베트분말·비유지방아이스크림분말 등을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p> <p>8.~9. (현행과 같음)</p> <p>10. 절입식품류제조업 :콩조림 및</p> <p>11.~14. (현행과 같음)</p> <p>15. 통조림 또는 병조림제조업 : 통 또는 병등 밀폐된 용기에 원형·절단상태의 고품질·겉 또는 죽상태의 것을 넣어 병원균 및 부패세균을 가열·살균처리하여 상당한 기간 내용식품 고유의 품질을 보존하게 하는 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p> <p>16. (현행과 같음)</p> <p>17. 청량음료 또는 과채류등 음료제조업 : 청량음료 제조업은 유기산음료·탄산음료·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 음료를 포함한다). 혼합음료(생유·우유 또는 유제품에 음료성분과 첨가물을 가하여 우유로 환원될 수 없는 청량감을 주는 음료성 식품으로서 무지유고형분 3퍼센트 미만을 함유한 것) 등을 제조하는 영업을 말하며, 과채류등 음료제조업은 과채류 또는 곡류를 주성분으로 하여 직접 음용할 수 있는 음료를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p> <p>18.~23. (현행과 같음)</p> <p>24. 인스턴트식품제조업 : 직접 또는 간단한 조리방법(가열, 물에의 용해등)으로 식용이 가능하며, 특별한 온도조정이 없어도 보존성이 높고 휴대 운반이 용이한 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으로서 다른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영업을 말한다.</p> <p>25.~29. (현행과 같음)</p> <p>30. 식품가공업 : 식품원료를 추출·분쇄·혼합등의 방법으로 단순히 가공하여 식용할 수 있는 식품을 제조하나 다른 식품의 제조·조리등에 사용하는 중간제품을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양곡관리법에 의한 제분업을 하는 자가 제분을 하거나 가공위탁자로부터 제공받은 재료만을 사용하여 식품을 가공하는 영업을 제외한다.</p> <p>31.~46. (현행과 같음)</p> <p>47. 젓가락등 위생처리업 : 소독젓가락·이쑤시개를 위생적으로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p> <p>48. (현행과 같음)</p> <p>②제 1 항제 1 호의 영업은 이를 대중음식점 또는 인</p>

식품위생법 시행령

현	행	개	정
<p>서는 이를 카바레·나이트클럽·요정등으로 구분하여 허가할 수 있다.</p>	<p>삼차집으로 구분하여 신고하게 하여야 하며, 동항 제 3 호의 영업은 이를 일반유흥음식점·무도유흥음식점 또는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으로 각각 구분하여 허가하여야 한다.</p>	<p>제 9 조의 2 (영업자의 준수사항등) ①~②(생략)</p>	<p>제 9 조의 2 (영업자의 준수사항등) ①~②(현행과 같음)</p>
<p>③제 9 조제 1 항제 2 호내지 제 6 호의 영업의 허가 관청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허가조건으로 부여하여야 한다.</p>	<p>③제 9 조제 1 항제 1 호의 2 · 제 2 호 내지 제 6 호</p>	<p>제 11 조(영업의 허가 및 신고관청) ①법 제 23 조제 1 항 및 제 5 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허가 및 신고 (영업장소 또는 시설의 변경허가 및 신고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행한다.</p>	<p>제 11 조(영업의 허가 및 신고관청) ①</p>
<p>1. (생략)</p>	<p>1. (현행과 같음)</p>	<p>2. 제 1 호에 기재한 영업을 제외한 제 9 조제 1 항 각호의 영업의 허가 및 신고는 그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행한다. 다만,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영업의 허가는 보건사회부장관이 행한다.</p>	<p>2.</p>
<p>3. 서울특별시·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제 9 조제 1 항 각호의 영업증 제 15 호(수산물물류원료로 하는 영업에 한한다)·제 31 호·제 32 호·제 40 호·제 41 호와 제 42 호(수산업에 관한 영업에 한한다)의 영업허가를 할 경우에는 제 2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따로 농수산부와 공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3. 도지사</p>	<p>②(생략)</p>	<p>②(현행과 같음)</p>
<p>제 11 조의 4 (조건부영업허가의 대상업종) 법 제 23 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는 영업은 제 9 조제 1 항제 3 호·제 6 호 내지 제 27 호·제 29 호 내지 제 33 호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한다.</p>	<p>제 11 조. 4 (조건부영업허가의 대상업종)..... 제 9 조제 1 항제 3 호·제 7 호 내지 제 27 호.....</p>	<p>제 12 조(영업허가의 신청 및 신고) ①법 제 23 조제 1 항·제 3 항 및 법 제 23 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제 9 조제 1 항 각호의 영업(제 11 조의 3 각호의 영업을 제외한다)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 11 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제 12 조(영업허가의 신청 및 신고) ①</p>
<p>1.~5. (생략)</p> <p>6. 제조방법설명서. 다만, 식품첨가물공전에 수록되어 있지 아니하는 첨가물에 대하여는 국립보건연구원장이 인정하는 당해 품목의 품질관리상 필요한 시험규격 및 시험방법에 관한 서류를 첨부할 것.</p>	<p>1.~5. (현행과 같음)</p> <p>6. 국립보건연구원</p>	<p>②(생략)</p> <p>③서울특별시·부산시장·또는 도지사가 제 9 조</p>	<p>②(현행과 같음)</p> <p>③도지사가 제 9 조제 1 항제 7 호·제 9 호·제 11 호</p>

현행	개정
<p>제1항·제7호·제9호·제11호 내지 제13호·제19호·제20호·제22호(인스턴트 면류에 한한다)·제23호·제27호의 영업허가를 한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12호·제14호.....</p>
<p>④~⑤(생략)</p> <p>제14조(조리사를 두어야 할 영업) 집단급식소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음식점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리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기숙사와 교도소·구치소·소년원 및 공무원교육원의 급식소는 제외한다.</p>	<p>④~⑤(현행과 같음)</p> <p>제14조(조리사를 두어야 할 영업)공무원교육원의 급식소와 그 종사자에 대한 급식만을 목적으로 설치된 집단급식소.</p>
<p>1.~2. (생략)</p> <p>제15조(영양사를 두어야 할 집단급식소) ①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양사를 두어야 할 집단급식소는 계속적으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로 한다. 다만,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급식소에 둔 조리사가 영양사의 면허도 받은자인 때에는 영양사를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p> <p>②집단급식소의 경영자는 집단급식소의 소재지, 급식인원등을 감안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서울특별시·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20이상의 집단급식소에 1인의 영양사를 두고 그로 하여금 이를 공동관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1.~2. (현행과 같음)</p> <p>제15조(영양사를 두어야 할 집단급식소)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로 하되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한 중소기업의 집단급식소를 제외한다.....</p> <p>(삭제)</p>
<p>제17조(위원의 임기와 직무) ①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p> <p>②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p> <p>③(생략)</p>	<p>제17조(위원의 임기와 직무) ①.....2년.....</p> <p>②.....통할하며,</p> <p>③(현행과 같음)</p>
<p>제23조(식중독원인의 조사) 법 제38조제2항(법 제4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장 및 그 지소장 또는 서울특별시·부산시장·시·읍·면장이 하여야 할 조사는 다음과 같다.</p>	<p>제23조(식중독원인의 조사) 서울특별시·직할시장.....</p>
<p>1.~2. (생략)</p> <p>제24조(식중독에 관한 보고) 서울특별시·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법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1.~2. (현행과 같음)</p> <p>제24조(식중독에 관한 보고) 도지사.....</p>
<p>제29조(지구등) ①법 제40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지구는 서울특별</p>	<p>제29조(지구등) ①..... 서울특별</p>

현	행	계	정
	<p>시·부산시 또는 도로 한다. 다만, 영업자의 수가 지구별로 조합을 설립하기에 부적당한 때에는 전국을 지구로 할 수 있다.</p> <p>②조합은 필요에 따라 구(서울특별시 및 부산시에 한한다). 시·군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p> <p>제34조(권한의 위임) 법 제40조 3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권한중 제9조제1항제7호·제9호·제11호·제12호·제14호·제19호·제20호·제22호(인스턴트 면류에 한한다). 제23호·제27호·제28호 및 제11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영업이외의 영업에 대한 제11조제1항제2호의 권한 및 법 제16조·법 제23조 내지 제26조의 3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 위임한다.</p>	<p>시·적할시 또는 도.....</p> <p>.....</p> <p>.....</p> <p>②.....(서울특별시 및 적할시)</p> <p>.....</p> <p>제34조(권한의 위임)</p> <p>도지사.....</p> <p>.....</p> <p>.....</p> <p>.....</p> <p>.....</p> <p>.....</p> <p>.....</p> <p>.....</p>	

營養스낵 三養「타잔」開發, 市販



三養食品工業(社長; 全應德)은 營養스낵「타잔」을 開發 市販하고 있다.

最新 先進施設을 導入, 高級少麥粉·물엿·벌꿀 등 精選된 原料를 사용, 組織이 부드럽고 마삭마삭하여 어린이 뿐만 아니라 성인들의 간식용·野遊會·파티用으로도 人氣가 있다. 50g 1食에 販賣가 격은 100원.